



조선대학교 - 상무대



교류협력협약서

조선대학교와 상무대 5개 병과학교(이하 상호기관)는 군사학 분야와 관련된 학술교류와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기관의 발전과 역량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 적) 본 협약은 상호기관의 군사학 분야 공동협력 추진을 통하여 교관 역량강화 증진을 도모하고 미래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 내용) 상호기관은 아래와 같이 서로 협력한다.

1. 군사학 분야에서 교육, 연구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
2. 교관 역량강화 증진과 학술 자문 및 협력
3. 미래 전투발전을 위한 전투발전세미나 추진과 자문 및 협력
4. 기타 군사학 분야 전투발전 및 기술의 진흥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

제3조 (협력 및 지원방법) 상호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적, 물적 자원의 제공 및 교환, 교육, 자문, 연구, 공동참여 등의 방법으로 교류 협력을 추진하며,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상호협의를 의하여 정한다.

제4조 (재정부담) 교류협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상호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.

제5조 (지식재산권) 본 협약을 통해 소통되는 모든 학술자료는 소속기관(저작자)에 그 권리가 유지되며 모든 행위는 법률 제18873 호 지식재산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조 (비밀유지) 상호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,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.

제7조 (분쟁해결) 이 협약서의 해석이나 시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제 8 조 (효력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서 2 부를 작성하며 “양 기관”이 각 1 부씩을 보관한다. 본 협약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2 년을 원칙으로 하되, 협약 해지 또는 갱신 여부는 만료 1 개월 전까지 검토 후 통보가 되도록 한다.

제 9 조 (협약의 해지)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 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, 협약을 연장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추가 연장 없이 만료일 협약이 해지된다.

제 10 조 (기 타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, 변경이나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상호기관은 위 협약 사항을 증명하고 상호간에 성실한 업무이행을 위해서 협약서는 2부 작성 날인하고, 2개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1월 10일



총 장 김 준 성



육군포병학교

학교장 소장 양 태 봉



육군보병학교

학교장 소장 표 창 수



육군화생방학교

학교장 준장 이 대 위



육군공병학교

학교장 준장 김 상 술



육군기계화학교

학교장 준장 문 기 수